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43 호

2003 년 11 월 7 일 금 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0호(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규칙)----- 3

예 규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46호(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 7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47호(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요강)---- 9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26호(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27호(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시설관
리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1호(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3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
제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2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1. 7.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에서 어패류를 취급하는 자에 한 하여 공급한다.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 ①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 관로에서 부터 공급자가 설치하는 계량기까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시설의 노후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비의 부담은 계량기까지는 공급자가, 계량기 이후 부터 이용시설 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료) ①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 받는자는 해수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해수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해수사용료는 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채납자에 대한 처리) 해수공급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사항, 해수사용료 채납자에 대한 채납처분 및 과오납 처리는 지방세법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관리·수탁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수공급 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으로 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이유
- 논현동 179-33번지상에 건립중인 해수공급시설이 2003년 10월 시험 운영 이후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소래지역 해수사용자에게 정식공급 예정이며
 - 제11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가 통과되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해수공급의 범위(안 제2조)
 - 해수공급시설의 설치 신청 및 공사에 소유되는 비용과 시설물의 교차등에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해수사용료의 단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채납자에 대한 처리(안 제5조)
 - 관리·수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규정(안 제6조)
- *****

[별표] (제4조관련)

해 수 사 용 료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해수사용료	ton(톤)	2,500원	

[별지] (제3조관련)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장소	설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호		
	1일소요량	m' (상호 :)		
해수사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용목적			
건축물현황	위 치			
	용 도		건축연면적	m'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건 축 물 허가여부	

위와 같이 해수공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규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1. 7.

인천광역시남동구예규 제46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I. 자치법규의 **조례** 중 3.조례의 규정사항의 『표 “현행법상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 (예시)”』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란 및 “산업 교육진흥법”란, 그리고 “생활보호법 시행령”란 다음과 같이 한다.

법령구분	내용	조례구분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위원회운영	시·군·구	제114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보조	시·군·구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보장기금의 설치·운영	시·군·구	제41조

4. 조례의 제·개정, 폐지절차의 라.선행절차 이행 중 (2)조례 안사전(입법)예고의 예고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0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의 3. 규칙의 규정사항의 『표 “현행법상 필요적규칙 규정사항(예시)”』 중 근거법령란의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란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거법령	조항	규칙규정사항	성질	규칙구분	비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0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2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2	시·도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03.7.1)됨에 남동구 법제사무처리지침상 입법예고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고 인용 범조항 등을 조정하여 법제사무처리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법상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중 인용법령 정비
- 조례의 제·개정 폐지절차중 입법예고대상 예시규정을
- 입법예고의 원칙하에 예외대상 명시로 개정
- 현행법상 필요적 규칙 규정사항중 인용법령 정비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요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1. 7.

인천광역시남동구예규 제47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요강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요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정 1994. 2. 25) 「제6장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질의·회시」로 명시되어 중복된 규정이므로 폐지하여 남동구 훈령·예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26호

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국세 3회이상 체납, 주기적 신고 미 실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공시 송달합니다.

1. 청문일시 : 2003.11.17일 기간중 출석
2. 청문장소 :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
3. 청문대상업체 및 사유 : (주)오성설비의 2개업체

번호	등록업종	상 호	대표자	주소	청문사유	처분내용	반송사유
1	기계설비공사업	(주)오성설비	오원배	구월동 1381-2	국세체납으로판 허사업제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이사
2	토공사업외1	중진건설(주)	최종철	만수동 1080-1	국세체납으로판 허사업제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3	토공사업외1	대길건설(주)	공홍식	만수동 1082	국세체납및주기적 신고미 실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4. 청문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 참석시)
- 주장을 입증할서류

5. 청문시 유의사항

- ① 귀하는 청문실시 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간중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않고 행정처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천광역시남동구청 건설과: ☎ 453-2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1.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2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 제정취지 : 수도법의 개정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함
 - 관리자는 수질검사 및 정기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함
 -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재해·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구청장이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는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53-2430, FAX 453-243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계획 : 공청회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제4조 (소규모급수시설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울타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수질검사) ①구청장은 수도법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구청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3장 관리비 징수

제12조 (관리비 징수) ①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전기료, 기타 유지관리 필요비용 포함)로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비는 최소경비로 산출하여야 하며 징수액 결정 및 지출방법 등은 “관리비 운영 세부규정”을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정한 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계량기) ①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용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4조 (설치)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성 및 임무)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급수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시설관리책임자는 대표자를 보좌하고 대표자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책임자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회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회사, 전문가 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와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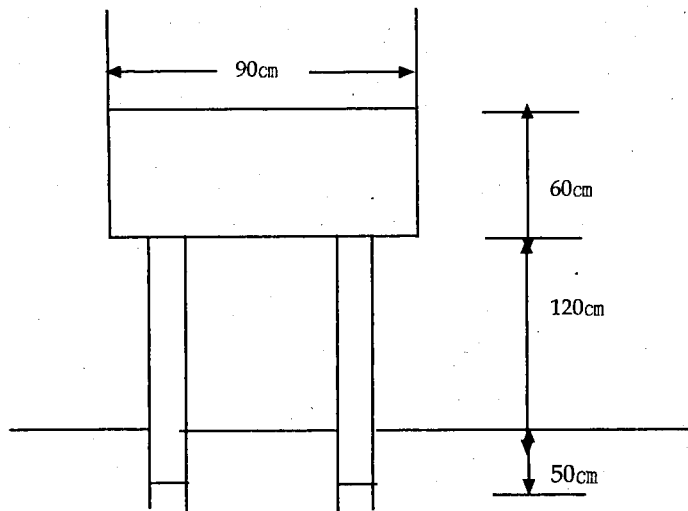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관련)

○ 규 격



- 재료 : 표지판 - 알루미늄(두께 3mm), 기둥 - 스테인리스(직경 50mm)
- 색채 : 바탕(흰색), 글씨(청색)

○ 내용문안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발견 시 연락처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TEL : 453-2430)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 (제4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남동구 제 호						
구 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마을						
	관 리 자	성 명		전화번호				
	준공연월일			최초사업자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						
	취 수 시 설	보유시설	①집 수 정 ②양 수 모 터 ③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집 수 정1				심도 M	
			집 수 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 수 시 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송·배수 관 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수원 상태	수질오염	수질검사상태		주변오염원 산재여부				
	출수상태							
특기 사항	시설보수							
	수원이전							
	급수상태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남 동 구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 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남 동 구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1호

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미 실시 업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공시송달합니다.

1. 청문일시 : 2003.11.19일(수요일) 14:00
2. 청문장소 :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
3. 청문대상업체 및 사유 : 강진토건(주)외37업체
4. 청문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참석시)
 - 주장을 입증할 서류
5. 청문시 유의사항
 - ① 귀 하는 청문실시 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② 귀 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간 중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 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정처분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453-2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1.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청문공시송달업체현황

청문회실시대상자				위반내용	처분에정내용	비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대광산업(주)	철 물 경기92-11-5	김정곤	논현동430-6 공단17블럭 7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대성	창 호 인천08-45 철 물 인천11-1	김용래	고잔동729-7 공단159블럭 8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덕천건설(주)	실내건축 인천98-01-4	안백기	간석동292-4 원빌딩40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도성개발(주)	창 호 인천94-08-07	김종국	만수동987-1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동주토건(주)	토 공 인천94-02-37	최종률	구월동131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두성건설산업 (주)	비 제 인천07-5 보 링 인천94-14-03	윤석호	고잔동630 산업유통센터 B동 24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명성토건	철 콘 인천97-10-46 상하수도 인천98-13-31	이승재	구월동1139-8 우남빌딩50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밀레니엄건설 (주)	토공공사업 서울96-02-129 철 콘 서울96-10-161	이형재	구월동279-3 개나리빌딩4층 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청문공시송달업체현황

청문회 실시대상자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용	비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보림개발(주)	미장,방수 인천96-03-1	곽병주	구월1동 1157-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보림조경	조경식재업 인천95-18-1	황만규	만수동931-1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삼도석재(주)	석 공 인천92-04-7	차상윤	구월동1256-1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세운개발(주)	토 공 인천94-02-33 철 콘 인천94-10-33	김원석	간석1동55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수정장식	실내건축 인천96-01-10	김미자	만수동916-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신라건설(주)	철 콘 인천94-10-44	조대형	구월동1219-1 뉴인천빌딩 30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신일토건(주)	토 공 서울92-02-266 철 콘 인천94-10-39	김중세	만수동1082 창대장터상가 1동20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신한건설	철 물 인천92-11-7	김복한	고잔동 공단2단지156 블럭16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청문공시송달업체현황

청문회실시대상자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용	비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아이시스산업 (주)	실내건축 인천98-01-6	이영근	고잔동656-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영신건설(주)	미장방수업 인천92-03-4 철 콘 인천92-10-9	이상열	구월3동1108-1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영신석재 공영	석 공 인천92-04-3 철 콘 인천92-10-31	김영준	간석동113-1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예창	실내건축 인천92-01-1	김혁동	구월동1471-1 하나빌딩5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웅비건설(주)	토 공 인천92-02-24 포 장 인천94-16-01	백상기	간석동240-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정원기계(주)	철 물 인천92-11-18	박기원	고잔동667-10 공단95블럭 11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천성건설(주)	철 콘 경남92-10-170	진병준	만수동969-1 왕송빌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태산공영	창 호 인천94-08-03	차준호	구월2동1244-14 RG빌딩B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청문공시송달업체현황

청문회 실시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 예정 내용	비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주)터보셀	시설물 남동99-30-5	이근천	만수동967-8 거신빌딩7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한성개발	토공 인천02-100 상하수도 인천13--33	김윤규	구월4동1285-1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한우건설(주)	토 공 인천92-02-4 철 콘 인천92-10-17	김도현	만수5동912-1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해영건설(주)	토 공 인천92-02-24	권경하	구월4동129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주)금강종합 석전	석공 인천95-04-2	유봉근	만수동353-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동주토건	토 공 충남94-02-23	이병희, 최관재	구월3동1110-1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및영업정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3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 및 인천광역시 동부 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논현, 고잔동 및 간석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11. 7 ~ 2003. 12. 6(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12. 6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453-2284)

2003. 11.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산71	가옥 거실 겸 점포 화장실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39.78 12.30 7.20	안준환	남동구 논현동 산71	
2	논현동	산71	가옥 보일러실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34.70 6.00	안기용	남동구 논현동 산71	
3	논현동	산71	가옥 관정	브릭스레트	43.92 1식	안정일	남동구 논현동 산71	
4	논현동	산71	가옥 부엌 현관 보일러실 화장실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스레트 브릭스레트	43.43 7.26 14.96 6.29 3.24	강선경	경기 시흥시 진천동 754-4	
5	논현동	산71	가옥 현관및보일러실 화장실 관정	조립식판넬스레트 알미늄샷시 목조스레트	70.04 10.26 6.40 1식	김정숙	남동구 논현동 산71	
6	논현동	324-23	가옥	브릭스레트	86.40	최항섭	남동구 논현동 324-23	
7	논현동	324-22	가옥 가옥 가추1 가추2 가추3	브릭기와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목조스레트 목조스레트	94.36 74.50 16.80 21.30 10.44	강정하	남구 도화동 103-2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8	논현동	324-4'	가옥	브럭기와	125.39	강정원	서울.영등포구 대림동 851-16.	
			가옥	브럭스레트	16.74			
			가옥	브럭스라브	39.96			
			가추	목조썸라이트	14.60			
			가추	목조썸라이트	10.34			
			화장실	브럭스라브	1.00			
9	논현동	411-41	가옥	브럭기와	92.63	박재천	남동구 논현동 411-41	
			다용도실	브럭스레트	6.24			
			가추	알미늄샷시썸라이 트	18.2			
			창고 겸 화장실	브럭스라브	9.52			
10	논현동	411-40	가옥	브럭스레트	36.00	정근성	남동구 논현동 411-40	
			차양막	목재썸라이트	9.00			
			관정		1식			
11	논현동	산71	가옥	브럭스레트	30.07	방종만	남동구 논현동 산71	
			목욕탕 및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6.30			
			현관 및 마루	목조스레트	7.92			
			가추	목조스레트	3.24			
			건사	목재	1.44			
12	논현동	산71	가옥	브럭스레트	32.43	공정순	남구 주안동 1289-15	
			가추	철파이프함석	24.15			
			가추	목재스레트	17.22			
13	논현동	산71	가옥	브럭스레트	82.80	최성홍	남동구 논현동 산71	
			창고 및 보일러실	브럭스레트	6.90			
			가추	목조썸라이트	10.35			
			관정		1식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4	논현동	351-46	가옥 화장실 가추 보일러실 및 창고 관정	브럭기와 브럭스라브 썬라이트 브럭스레트	81.44 6.24 10.40 20.00 1식	이숙례	남동구 논현동 351-46	
15	간석동	364-2	사무실 창고	철구조물 컨테이너	9.0 1개	권을남	남동구 간석동 24-10	

